

성희롱·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



Jeju 제주특별자치도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
분야별 성희롱·성폭력 신고·상담센터

구분	홈페이지	신고대상	신고방법	지원내용
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신고센터	http://www.mogef.go.kr Tel. 02-735-7544	공공부문 종사자	온라인게시판	·법률, 의료, 심리상담 지원 연계 ·사건발생기관 컨설팅 ·해당 신고센터 연계
교육부 교육분야 온라인 신고센터	https://www.moe.go.kr	교사, 교직원, 학생	온라인게시판	·피해자 상담, 수사, 징계 등 절차 지원 (시·도교육청 및 대학 전담 기구와 연계)
고용노동부·익명신고센터	https://www.moel.go.kr	근로기준법상 근로자	온라인게시판	·피해자 심리상담 (고용평등상담실)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	http://www.kawf.kr Tel. 02-3668-0266	예술인	전화, 온라인게시판, 이메일, 방문	·심리상담 지원 ·법률, 의료 지원 ·인권위,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
콘텐츠 성평등센터 '보라'	http://bora.kocca.kr Tel. 02-1670-5678	콘텐츠 산업계 종사자	전화, 온라인게시판, 방문	·심리상담 지원 ·소송지원 ·의료비지원
한국영화성평등센터 '든든'	http://solido.kr Tel. 1855-0511	영화산업에 종사 또는 참여자	전화, 이메일	·심리상담 지원 ·소송지원 ·의료비지원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	http://www.mcst.go.kr Tel. 1899-7675	체육 관련자(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)	전화,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(실명, 익명), 이메일, 팩스, 우편, 방문	·문체부 및 관련 체육단체에 감사·조사 의뢰 ·수사기관 의뢰
여성긴급전화 1366 (성폭력상담소 등 연계)	http://www.women1366.kr Tel. 1366 [지역번호+13666] *110으로도 연계 가능	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및 제3자	전화 및 사이버 상담	·초기 상담 및 일시보호 지원 ·지역별 상담소·보호시설 연계

성희롱 법적 근거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2조 제2호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

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

■ 개념

행위자	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
피해자	불특정(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) *다른근로자(남녀고용평등법)
성희롱 범위	·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·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
■ 성립요건

- 성희롱 주체의 성적 언동이 “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” 이거나 “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”로 이루어진 경우(국가인권위원회)

-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 하는 지에 대하여 ‘행위 장소 및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’로 판단(국가인권위원회)

■ 판단기준

- 대법원은 “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, 판단하여야”하며 “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‘성인지감수성’을 잃지 않아야 하며,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‘2차 피해’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”고 함(대법원 2018.4.12. 선고 2017두 74702판결)

성희롱 예시

육체적 행위

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끼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
- 가슴·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

시각적 행위

-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·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(전화 문자, SNS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)
-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

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

- 채용탈락, 감봉, 승진탈락, 견책(譴責), 정직(停職), 휴직 강요,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

언어적 행위

- 음란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(전화 통화 포함)
-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-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
-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
기타

-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


2차 가해(피해)의 주요 양상

사용자·관리자·상담자에 의한 2차 가해(피해) 양상

- 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
-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
-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
-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
-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
-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
-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중용하는 행위

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(피해) 양상

-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
-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선부르게 판단하는 행위
-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
-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
-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
-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
- 행위자를 옹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중용하는 행위
-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
-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

행위자에 의한 2차 가해(피해) 양상

-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
-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
-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
-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
- 피해자(가족)가 원치 않는데 연락 또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



성희롱 사건 해결제도

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활용

피해자는 각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 상담 또는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함

형사 고소

성희롱이 그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, 「성폭력처벌법」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소도 가능

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

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

고용노동부 고발

행위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

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성희롱에서 기인된 사용자의 부당한 징벌,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

민사소송

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행위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행위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, 손해배상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

*사건일로부터 10년 혹은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 가능

